

의안번호	2215879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6.5.22.
추계번호	26B006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항)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2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	재량규정
2	안 제27조의2 신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27조의3 신설 (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2.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29조제3항 제9호 신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사업을 수행한다.(제3항제9호)	의무규정
5	안 제35조제2항 제8호 신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제2항) 8.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								
1	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미대상)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 근거가 되는 지원수단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이 소유한 건축물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에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공공지원 사업, 사업기획 지원사업, 시공지원, 우수 사례발굴 및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²⁾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민간건축물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며, 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음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2025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table><tr><td></td><td>사업승인(건)</td><td>예산</td><td>결산</td></tr><tr><td>2014~2025(누적)</td><td>79,640</td><td>65,937</td><td>46,879</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사업승인(건)	예산	결산	2014~2025(누적)	79,640	65,937	46,879
	사업승인(건)	예산	결산							
2014~2025(누적)	79,640	65,937	46,879							
2	안 제27조의2 신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27조의3 신설	•(미대상)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																																								
	(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그런데 이는 현행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사업효과 분석 및 확산 사업 등이 이미 수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역거점 플랫폼 운영, 산업발굴 경진대회, 설명회, 워크숍 및 홍보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참고자료 2] 참조)																																								
4	안 제29조제3항 제9호 신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미대상) :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수행 사업에 안내 및 상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되어 위탁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음 －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그린리모델링(공공·민간건축물) 재정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참고자료 2] 참조)																																								
5	안 제35조제2항 제8호 신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단위 : 억원) <table><tr><th colspan="2">구분</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h>합계</th></tr><tr><td rowspan="3">국토안전 관리원</td><td>공공부문</td><td>1,995</td><td>1,851</td><td>1,275</td><td>1,089</td><td>6,209</td></tr><tr><td>민간부문</td><td>3</td><td>5</td><td>1</td><td></td><td>9</td></tr><tr><td>소계</td><td>1,998</td><td>1,855</td><td>1,276</td><td>1,089</td><td>6,218</td></tr><tr><td colspan="2">한국부동산원</td><td>－</td><td>－</td><td>－</td><td>57</td><td>57</td></tr><tr><td colspan="2">합 계</td><td>1,998</td><td>1,855</td><td>1,276</td><td>1,145</td><td>6,275</td></tr></tabl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구분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토안전 관리원	공공부문	1,995	1,851	1,275	1,089	6,209	민간부문	3	5	1		9	소계	1,998	1,855	1,276	1,089	6,218	한국부동산원		－	－	－	57	57	합 계		1,998	1,855	1,276	1,145	6,275
구분		2022	2023	2024	2025	합계																																				
국토안전 관리원	공공부문	1,995	1,851	1,275	1,089	6,209																																				
	민간부문	3	5	1		9																																				
	소계	1,998	1,855	1,276	1,089	6,218																																				
한국부동산원		－	－	－	57	57																																				
합 계		1,998	1,855	1,276	1,145	6,275																																				

- 1) 제6조(민간이자지원사업의 실시)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의 실시)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공공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사업의 사업개요, 대상 건축물,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지원사업의 대상) ①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은 사업기획지원사업과 시공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업기획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쾌적성 등 측정·분석
 2.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사항 등
 3.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설계 방안 및 사업비 산출 등
 4. 그 밖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③ 시공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사업계획 검토 및 기존설계안의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
 2. 단열공사, 고성능창호 교체공사, 고효율 냉난방장치, 일사(日射)조절장치, 차양장치,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지원
 3. 사업 이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분석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의무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을 이행해야 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동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표 1] 용도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동)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어린이집	72	58	—	130
보건소	127	163	37	327
의료시설	4	1	—	5
경로당	376	340	187	903
도서관	38	—	12	50
기타노유자시설	—	—	15	15
기타교육시설	—	—	2	2
기타공공시설	—	—	5	5
기타용도	—	—	3	3
합계	617	562	261	1,44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표 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3년			'24년			'25년			합계		
	국비	자방비	합계	국비	자방비	합계	국비	자방비	합계	국비	자방비	합계
지원 사업 예산	1,710	835	2,545	1,031	489	1,520	971	473	1,444	3,712	1,797	5,509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또한 정부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을 통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관련 제도·기술·행정지원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표 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관련 사업 현황

구분	주요내용
의무화 추진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마련 추진
기반마련 연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계획 수립
평가방안 마련	온실가스 감축계수 산정 및 배출량 평가방안 마련 고도화
지침 마련	그린리모델링 핸드북 마련
지원 내용	제도·기술·행정 지원 등 추진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의무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공사비용은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이며, 대상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에너지 성능수준을 알 수 없고, 건물별 시설 정비 방법과 공사의 종류 등이 상이하여 현시점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의무추진 공공건축물을 선정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정 및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관련한 지원업무의 확대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의무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공건축

물의 연면적과 노후화 상태 등에 따라 기술지원 및 관리·감독 업무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6132-301) 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2.0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와 폭염·혹한·홍수·강풍 등 눈앞으로 다가온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거주 안정성 향상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및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필요, 건물부문의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 ① 사업비 지원사업과 ② 의무화사업 시행
 -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탄소감축 효과와 함께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적응력 강화기술(차수설비, 구조/내진보강 등)까지 확대
 - (의무화 본격 추진)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
- (사업내용) 공공건축물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지원사업 및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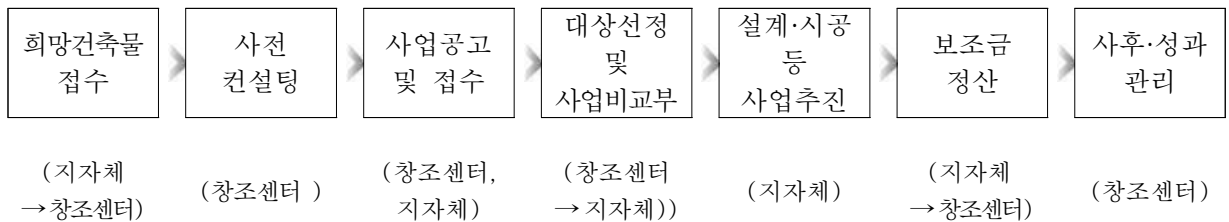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번호	내역 사업	사업비(백만원)
①	공공건축물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168,843
②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32,375
합계(①+②)		201,218

1. 공공건축물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지원

□ 사업 개요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안전 성능 종합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국비·지방비 매칭)으로
 - －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화 및 재난재해 등 기후 위기 적응력 강화

□ 사업 추진 절차



□ 주요내용

- (지원사업) ❶종합형, ❷맞춤형, ❸군집형 성능개선 분야 공모
 - － (지원대상) 에너지 다소비 및 다물량 건축물*
 - * 도서관, 경로당, 기타 교육연구/ 노인복지/ 노유자/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 (지원항목)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기술** 지원
 - * 벽체 및 지붕 단열, 창호,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신재생 에너지 등
 - ** 홍수 대비를 위한 차수벽 설치, 폭염을 대비한 건물 녹화, 지진대비 내진보강 등
 - － (지원한도) 400만원/3.3㎡·지원사업당
- (종합사업지원) 사업기관(지자체 등)에 사전 컨설팅 및 설계 검토 등 사업 전 과정(기획·계획, 설계·시공, 준공 이후)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성과관리) 사업 전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기반으로 사업 성과평가
- (생태계구축) 미래인재양성 및 지역역량강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기술적 토대를 마련

2.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사업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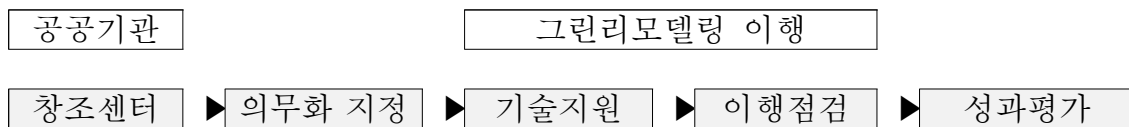
- (필요성)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의 속도감 있는 저탄소 전환 확산을 위해 선도적으로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
 - 민간부문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자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시장 생태계 조성

* EU,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 역시 공공건축물 중심의 기축 건축물 탄소중립화 추진 中

- (대상범위) 그린리모델링 로드맵에 따라 `30년까지 6개 용도*, 3000㎡ 이상 공공건축물(4,455동) 중 의무화 대상을 선정

*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수시설

□ 추진절차



□ 주요내용

- (의무화 지정) 실제 에너지사용량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여 후보 건축물 선정 후, 현장조사 → 협의 → 심의를 거쳐 의무화 대상 지정
- (기술지원) 공공기관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최상의 사업성과 도출을 위하여 사업 전과정(기획·설계·시공·준공)에 대한 기술지원
- (점검·관리)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전과정(대상선정, 계획수립, 이행, 운영, 성과평가 등)에서의 목표달성 여부 점검 등 행정절차 수행
- (성과평가) 그린리모델링 전·후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에너지 실사용량을 활용하여 실질적 에너지·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관리

[참고자료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설립근거) 「녹색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업무 전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주요업무) 국토안전관리원(‘21년~), 한국부동산원(‘24년~)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기관명	주요업무
국토안전관리원	공공·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수행,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및 사업총괄 관리업무 수행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관리 및 평가업무, 그린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업무 수행 중

일 자	(※ 참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경위
’12.0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13.12.	한국시설안전공단(現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15.05.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 이관 내용 포함)
’15.12.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관(공단 → L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20.04.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에 그린리모델링 포함으로 지원규모 확대
’21.07.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재지정
’21.09.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따라 LH 기능조정
’23.01.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사업 종료 및 이관(LH → 관리원)
’24.12.	한국부동산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추가지정
’25.03.	그린리모델링 지역센터(세종) 운영 (국토부·관리원·부동산원 공동운영)

□ 재정지원 현황

《 공공 및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재정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토안전관리원	공공부문	199,487	185,053	127,503	108,864	620,907
	민간부문	346	476	100	—	922
	소 계	199,833	185,529	127,603	108,864	621,829
한국부동산원		—	—	—	5,660	5,660
합 계		199,833	185,529	127,603	114,524	627,489

□ 사업내용 및 실적

- (공공부문) 공공의 선도적 추진으로 민간으로의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직접 지원사업과 단계적 의무화를 병행 추진
 - (직접지원) 국민생활 밀착형(취약계층이용, 에너지다소비 등) 공공건축물에 공사비를 매칭 지원하여 에너지성능 개선('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실적》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사업실적(동)	821	895	575	617	562	261	3,731
국비지원(억원)	2,180	2,141	1,836	1,710	1,031	971	9,896

- (종합사업사업)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One-Stop 서비스 제공 및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하여 사업관리 효율성 확보

구 분	지원사업 단계	주요내용
공모 前	① 기획·계획	· 희망건축물 자격검토 · 건축물의 현황조사, 에너지 분석 및 안전점검 · 공사 후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 최적의 사업계획(안) 제시 (적용 공사요소 및 총 사업비 포함) 등 · 대상선정을 위한 배점표 작성
	② 설계·시공	· 사업계획(안) 내용 및 사업변경 자문 · 설계·시공 전 단계의 기술·행정 지원 등
공모 後	③ 준공 이후	· 공사 후 에너지 분석을 통한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안전점검 등

- (의무화)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³⁾하기 위해 기반마련 연구⁴⁾ 및 제도·기술·행정 지원 등 추진

3)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법안 발의('25.3) 및 하위법령 마련 중

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시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계수 산정 및 배출량 평가방안 마련 고도화', '그린리모델링 핸드북 마련' 등 연구과제 수행

- (활성화 지원) 그린리모델링 저변확산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21~), 산업 발굴 경진대회**('24~) 등 추진

구분	추진 목적 및 주요업무
지역거점 플랫폼	각 지역의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축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기획·지원 • 연구경진대회/지역정책특화사업 추진('23년 32개, '24년 6개) • 그린리모델링 공사완료대상 품질검사('23년 185건, '24년 245건) • 지역역량 강화* 및 홍보** 등 * 교육 : '23년 640회, '24년 191회 / 인턴쉽 등 : '23년 380인, '24년 439인 ** 기자단 : '21년 42인, '22년 48인, '23년 55인, '24년 33인 첼린지 : '21년부터 총 4회 개최
산업발굴 경진대회	전세계적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지속적 산업발굴 체계 구축) • ('24년) 10개 기관 공모에 지원·참가하여, 최종 6개 과업 선정 • ('25년) 12개 기관 공모에 지원·참가하여, 최종 5개 과업 선정

- (교육지원) 사업관계자⁵⁾ 대상으로 설명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지원·운영 등에 관한 교육으로 사업 이해도 제고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상반기)	합계
설명회·워크숍(회)	10회	10회	14회	9회	43회

- (홍보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체감도 확산을 위해 종합 홍보⁶⁾ 추진 및 홍보관⁷⁾ 구축 등

홍보영상(언론매체 홍보)	SNS 기획운영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 (민간부문)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 이자지원 사업 추진('14~'23)

5) 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자(설계·시공) 등
6) 방송기획,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홍보, 홍보물품 제작 박람회 등 진행
7) 그린리모델링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상설홍보관 구축('24.12/서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25.7월 기준)>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사업 승인(건)	352	2,753	7,742	8,551	9,278	11,427	12,005	11,955	7,217	8,381	—	—	79,640
예산 (백만원)	2,000	3,000	800	1,658	3,200	6,788	8,296	10,217	10,242	8,076	6,360	5,300	65,937
이자지원 (백만원)	31	476	800	1,658	3,200	6,547	6,082	6,743	6,807	6,778	6,021	1,736	46,879

- 현재 이자지원 사업 신규 접수는 중단된 상황이며,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자체·민간
매칭사업⁸⁾* 에너지 컨설팅 사업 추진 예정('26년~)

8) 민간이 최소 50% 부담하며, 나머지 정부지원 50% 중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은 지역별 차등적용(서울은 5:5, 그 외 지자체의 경우 7:3)